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4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5.

발 의 자 : 용혜인 · 한창민 · 황명선
염태영 · 소병훈 · 박수현
이광희 · 정혜경 · 차규근
이해민 · 손 술 · 서왕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특히 지난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변경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함.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구현,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시정, 주기적 주택 가격 폭등의 방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유지하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보유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

또 국민경제의 일반적인 개선을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 지대(地代) 수익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토지에 집중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토지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농지·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과세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로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토지세의 산출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 세액 및 주택분 재산세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함(안 제10조).

마.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며, 토지

배당 수급권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토지배당액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토지세 및 토지배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배당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25조).

사. 이 법의 시행에 맞춰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보유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4.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5.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7. “토지배당”이라 함은 제16조에 따라 토지배당특별회계로 전입한 토지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4조(과세대상) 토지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5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토지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

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토지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

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납세지) ① 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 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③ 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제7조(비과세)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은 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산세의 비과세규정에 따라 토지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토지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등

제8조(과세표준) ①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① 토지세는 제8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토지세의 세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동향, 적정 토지배당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세율에 대하여 30% 범위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세 세액공제)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산출한 토지세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1. 토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

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토지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에 (주택 공시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을 곱한 금액은 토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장 부과·징수

제11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토지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없었

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토지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분할납부)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물납)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토지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장 토지배당

제16조(토지배당의 지급) ① 토지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

② 토지배당액은 토지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의한 토지배당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지배당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배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토지배당 수급권의 보호) 토지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8조(토지배당 수급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토지배당 수급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토지배당 수급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토지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에게 토지배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 방법 등 토지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토지배당의 지급 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토지배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배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미지급 토지배당의 청구) 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는 미지급 토지배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토지배당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배당의 지급 정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는 토지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토지배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토지배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배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4조(토지배당의 환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토지배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토지배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하여 환수

한다.

1.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배당을 받은 경우
 2. 제22조에 따라 토지배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토지배당이 지급된 경우 등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배당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 대상인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토지배당특별회계

제25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토지배당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2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세출) 특별회계는 토지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토지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2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토지세 과세표

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잔잔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3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토지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 등) ① 토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토지배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 (이하 “토지배당지급신청자”라 한다)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배당지급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토지배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매각·등기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토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각·등기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토지배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토지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 및 토지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동산교부세”를 “토지교부세”로 한다.

2.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의3의 제목 중 “부동산교부세”를 “토지교부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부동산교부세”를 각각 “토지교부세”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을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토지세”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4호를 신설한다.

24.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